

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운영 매뉴얼

제1조(목적)

회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운영 매뉴얼을 통해 당사에서 설치,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에 대해 효율적으로 운영,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 목적)

- ①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
- ② 직원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및 수사
- ③ 시설물의 도난사고 증거확보

제3조 (설치대수, 위치, 촬영범위)

- ① 설치 대수: 총 2대 (출입문, 서버실)
- ②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: 당사 출입문 및 전산실

제4조(관리 책임부서 및 담당자)

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CCTV 보호책임자를 지정한다.

- ① 관리책임자: 준법감시인
- ② 관리담당부서 및 관리자 : 경영관리팀 / 경영관리팀장

제5조(촬영시간, 보유기간, 보관·관리·삭제의 방법, 보관 장소 등)

-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시간은 24시간 365일 상시 녹화로 한다.
- ② 영상정보의 열람 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30일 이내로 한다.
 - A.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자료
 - B. 시설안전·화재예방·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당사가 별도로 보유기간을 지정하여 보유하는 경우
- ③ 영상정보의 관리는 자동녹화장비(DVR)의 메모리용량에 의해 자동 보관·삭제토록 한다.
- ④ CCTV 기기의 유지보수 관리 등은 외부 업체에 위임 할 수 있으며, 해당 업체에서 유지보수 및 관리 업무 진행시 관리부서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.

제6조(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·열람·재생할 수 있는 사유)

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(이하 관계자)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·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. 다만,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- 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
- ② 정보주체에게 열람·제공되는 경우
- ③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④ 신문·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

- 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- ⑤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이유와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 - ⑥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 - ⑦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

7조(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)

이 지침은 금융위원회의 일반사모 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시행하며, 법령 정책 보안 기술의 변경에 따라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수 있다.